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2025. 1. 13.

KEF 사단법인 대한승마협회

목 차

I. 보고사항

- 1. 전차 회의록 초록 1
- 2. 제41대 회장선거 결과 2
- 3. 임원 재적 변동 3

II. 심의사항

- 1.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4
- 2.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5
- 3. 협회 정관 개정(안) 6
- 4. 2025년도 국가대표(청소년·유소년 포함)선수·상비군 선발안 12
- 5. 국가대표 지도자 임용 계획안 14
- 6. 법인화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과실금 사용 승인 26
- 7.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안 28

III. 기타사항

보고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차 이사회-보고-제1호	2025. 1. 13.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1 전자 회의록 초록

- 2024년도 제9차 이사회는 2024년 12월 10일 14시에 협회 사무실과 화상회의(ZOOM)에서 재적 임원 23명중 14명 참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보고사항으로 회장 직무정지와 임원 재적 변동에 대하여 원안 접수하여 주셨습니다.
- 심의사항은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안과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안으로 원안 승인하여 주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차 이사회-보고-제2호	2025. 1. 13.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2 제41대 회장선거 결과

□ 보고사항

- 제41대 회장선거 결과를 보고

□ 보고사유

- 관련근거: 2024년도 제9차 이사회(2024. 12. 10.)에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안 원안 승인
- 회장선거 개최(2025. 1. 6.) 결과에 따른 보고

□ 주요내용

- 선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번호	위원회	개최일자	심의사항
1	제1차	2024. 12. 13.	· 위원장 선출 · 선거 세부일정 및 선거인 선정기준 심의
2	제2차	2024. 12. 23.	· 선거인 배정
3	제3차	2024. 12. 27.	· 선거인 명부 작성
4	제4차	2024. 12. 31.	· 선거인 명부 확정 및 후보자 번호 추첨
5	제5차	2025. 1. 6.	· 선거 개표결과 확인 및 당선결정

- 주요 경과

번호	구분	일자	내용
1	선거일 공고	2024. 12. 26.	선거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2024. 12. 27.	
3	후보자 등록	2024. 12. 30. ~ 31.	후보자등록(3명 중 2명 인정)
4	선거	2025. 1. 6.	선거/ 개표/ 당선결정

- 당선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비고
박서영	1981. 12. 21.	· Focus Law Asia 변호사 · 아시아승마협회(AEF) 부회장	

보고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차 이사회-보고-제2호	2025. 1. 13.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3 임원 재적 변동

□ 보고사항

- 임원 재적 변동을 보고

□ 보고사유

- 부회장 1명 사임에 따른 보고

□ 주요내용

- 홍정호 부회장 사임(2024. 12. 30.)에 따른 임원 재적 변동
- ※ 재적임원 총 23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20명, 회계감사 1명)
[2025. 1. 13. 현재]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차 이사회-심의-제1호	2025. 1. 13.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1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 의결주문

-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해 심의·주문함

□ 제안사유

- 협회 정관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에 의거하여 심의

□ 주요내용

- 2024년도 주요 사업실적 및 결산액
 - 국내대회: 14개 대회 개최(제40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등) 및 16개 공인대회 개최(제5회 경기도승마협회장배 전국승마대회 등)
 - 국제대회
 - 파견: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대회, CSICH-B Pattaya 2024, 제52회 한일승마대회 이상 3개 대회
 - 개최: KRA Cup CSIJ-B Seoul 2024, AEF Cup CSIJ-B Jeju 2024
프린세스컵 코리아 2024 및 한태 친선 승마교류전 이상 3개 대회
 - 국제회의: FEL, AEF, ITPF 정기총회 3건
 - 국내회의: 이사회 등 27건
 - 결 산 액: 3,434,411천원

□ 심의결과: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원안 승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차 이사회-심의-제2호	2025. 1. 13.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2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의결주문

-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심의·주문함

□ 제안사유

- 협회 정관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에 의거하여 심의

□ 주요내용

-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액
 - 국내대회: 2024 춘계전국승마대회 등 12개 대회 개최
 - 국제대회
 - 개최: 2025 CSI CH-B 국제승마대회, KRA Cup CSIJ-B Seoul 2025, 제53회 한일승마대회 등
 - 파견: FEI Asia Championship Pattaya 2025 등
 - 강 습 회: FEI 마장마술 국제심판 양성 강습회, 2025 유소년 승마 강습회 등 개최
 - 회 의: 이사회 및 각 분과위원회 등 30건
 - 예 산 액: 3,076,000천원

□ 심의결과: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원안 승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차 이사회-심의-제3호	2025. 1. 13.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3 협회 정관 개정(안)

□ 의결주문

- 협회 정관 개정(안)에 대해 심의·주문함

□ 제안사유

- 2024년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2025. 1. 6.)에서 ‘협회 정관 개정(안)’ 원안 동의
- 대한체육회 제36차 이사회(2024. 12. 26.)에서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

□ 주요내용

- 총회에서 회장 선출하는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
 - 회원종목단체 총회에서 회장 선출하는 경우 체육회 심사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 임원의 종료시점 명확화
 - 임원 임기 종료시점에 대해 정관 준용하여 명시
- 회장선거 시 기탁금 반환기준 명료화
 -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기탁금 전액을 회원종목단체에 귀속되도록 명시하여 반환기준에 대한 모호성 해소
- 회원종목단체 경영공시 구체화
 - 경영공시 공시주기(정기, 수시 등) 및 공시항목을 명확히 하여 회원종목단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기타 자구 수정(선거관리위원회→선거운영위원회 등), 용어 정비 등

□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p> <p>①~② “생략”</p> <p>③ 협회는 체육회 정관 제2조제4항과 같이 도핑방지규정을 <u>준수하여야</u> 한다. <신설 2022. 4. 28.></p>	<p>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협회는 체육회 정관 제2조제4항과 같이 도핑방지규정을 <u>지켜야</u> 한다. <신설 2022. 4. 28.> <u><개정 2025. 00. 00.></u></p>	<p>[자구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보 기준 반영
<p>제19조(회장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 4. 4.></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u>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u><개정 2023. 3. 28.></p> <p>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 심판, 동호인 등으로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자, 심판, 동호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 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9. 4. 4., 2023. 3. 28.></p> <p>④ “생략”</p>	<p>제19조(회장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 4. 4.></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u>총회에서 회장 선출을 하고자 하는 협회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개정 2023. 3. 28., <u>2025. 00. 00.</u>></p> <p>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u>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u>, 지도자, 심판, 동호인 등으로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자, 심판, 동호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 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9. 4. 4., 2023. 3. 28., <u>2025. 00. 00.</u>></p> <p>④ “현행과 같음”</p>	<p>[규정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회 내 심사 등 절차 간소화 심사결과 공고주체 변경 <p>[규정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은 제외
<p>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①~② “생략”</p> <p>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 4. 28.> [본조신설 2019. 4. 4.]</p>	<p>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u>운영</u>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 4. 28., <u>2025. 00. 00.</u>> [본조신설 2019. 4. 4.]</p>	<p>[자구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관리위원회→선거운영위원회
<p>제19조의4(기탁금 반환) ① 협회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개정 2022. 4. 28.></p>	<p>제19조의4(기탁금 반환) ① 협회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u>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u>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개정 2022.</p>	<p>[반환기준명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기탁금 전액이 회원종목단체에 귀속됨을 명확하게 명

현행	개정(안)	비고
<p>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p> <p>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p> <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협회의 특성에 따라 <u>100분의 25의 범위</u> 안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본조신설 2019. 4. 4.]</p>	<p>4. 28., <u>2025. 00. 00.</u>></p> <p>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p> <p>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p> <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협회의 특성에 따라 <u>100분의 10 이상</u>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u>2025. 00. 00.</u>> [본조신설 2019. 4. 4.]</p>	<p>시함으로써 반환 기준에 대한 모호성 해소</p> <p>[반환기준명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한선 명시
<p>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제지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u>관리</u>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4.></p> <p>②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u>준수하여야</u> 한다.<개정 2019. 4. 4., 2022. 4. 28.></p> <p>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p> <p>2. 선거<u>관리</u>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u>관리</u>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3.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p> <p>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p>	<p>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제지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u>운영</u>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4., <u>2025. 00. 00.</u>></p> <p>② 회원종목단체가 직접 선거<u>운영</u>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u>지켜야</u> 한다.<개정 2019. 4. 4., 2022. 4. 28., <u>2025. 00. 00.</u>></p> <p>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p> <p>2. 선거<u>운영</u>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u>운영</u>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u><개정 2025. 00. 00.></u></p> <p>3.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p> <p>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p>	<p>[자구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관리위원회→선거운영위원회 <p>[자구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관리위원회→선거운영위원회 <p>[자구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보 기준 반영 <p>[자구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관리위원회→선거운영위원회 <p>[자구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관리위원회→선거운영위원회

현행	개정(안)	비고
로 선임될 수 없다. ③~⑤ “생략”	선임될 수 없다. ③~⑤ “현행과 같음”	
제21조(회장의 직무대행) ①~③ “생략”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u>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u>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0. 6.]	제21조(회장의 직무대행)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u>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u>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0. 00.> [제목개정 2021. 10. 6.]	[규정 명확화] ▪ 잔여임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필요할 것이며, 어느날로부터 60일 인지 명시 필요
제22조(임원의 선임) ①~② “생략” ③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28.>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삭제 <2023. 3. 28.> 4. 삭제 <2023. 3. 28.>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개정 2019. 4. 4.> ⑤~⑨ “생략” [제목개정 2022. 4. 28.]	제22조(임원의 선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28., 2025. 00. 00.>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삭제 <2023. 3. 28.> 4. 삭제 <2023. 3. 28.>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개정 2019. 4. 4., 2025. 00. 00.> ⑤~⑨ “현행과 같음.” [제목개정 2022. 4. 28.]	[자구수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보 기준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고, 감사 외의 임원의 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5. 25., 2023. 3. 29.> 1.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첫번째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체육회가 인준한 날부터 임기가 시작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선임된 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라 회장에게 선임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한 날에 임기가 시작한다. ③~⑤ “생략”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고, 감사 외의 임원의 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5. 25., 2023. 3. 29.> 1.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첫번째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체육회가 인준한 날부터 임기가 시작한다. <개정 2025. 00. 00.> 2. 부회장 및 이사는 선임된 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라 회장에게 선임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한 날에 임기가 시작한다. <개정 2025. 00. 00.> ③~⑤ “현행과 같음”	[규정 명확화] ▪ 임기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정관 준용)
제33조(임원인준 등) ①~④ “생략”	제33조(회장인준 등) ①~④ “현행과 같음” <제목개정 2025. 00. 00.>	[자구수정] ▪ 임원→회장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u>이사회</u> 의 자문기구로 <u>이사회</u> 의 의결을 거쳐 <u>상설위원회</u> 또는 <u>한시적 위원회</u> 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4. 4.> 1. 경기력향상위원회 2. 심판위원회 3. 스포츠평정위원회 4. 생활체육위원회 5. 수의(獸醫)위원회 6. 선수위원회 7. 스포츠지도사자격검정위원회 8.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개정 2019. 4. 4.>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u>이사회</u> 의 의결을 거쳐 <u>이사회</u> 의 자문기구로 <u>대회위원회</u> , <u>경기력향상위원회</u> , <u>선수위원회</u> , <u>심판위원회</u> , <u>생활체육위원회</u>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4., 개정 2025. 00. 00.>	[규정 명확화] ▪ 전문 또는 생활체육 등 단체의 특성에 따라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종 위원회에 대해 자율적 운영토록 개정(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등 전문/생활 여부에 따라 상이함.)

현행	개정(안)	비고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56조(경영공시) ①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4.>	제56조(경영공시) 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매년 3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4., 2025. 00. 00.>	[규정 명확화] ▪ 경영공시의 목적 추가하여 명시 ▪ 변경사항 발생 시마다 공시할 수 있도록 개정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9. 26.>	② 제1항에 따른 공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 및 총회 결과 2. 예산 집행내역(예·결산서) 3.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4. 외부평가 결과 5. 감사 보고서 6. 외부기관의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7. 임원 및 직원 현황 8. 정관 및 모든 규정 9.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정계 현황 10. 법인화 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현황 11. 과실금 집행내역 12. 그 외 회장이 정한 것 <개정 2019. 9. 26., 2025. 00. 00.>	[공시 항목 추가] ▪ 감사 보고서 및 결과, 임원 및 직원 현황, 정관 및 각종 규정, 정계 현황, 법인화 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현황, 과실금 집행내역
<신설>	부 칙(2025. 00. 00.)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 심의결과: 협회 정관 개정(안) 원안 승인
- 별첨[3-1]: 협회 정관 개정(안) 전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차 이사회-심의-제4호	2025. 1. 13.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4 2025년도 국가대표(청소년, 유소년 포함)선수·상비군 선발안

- 의결주문
 - 2025 국가대표(청소년, 유소년 포함)선수·상비군 선발안에 대하여 심의·주문함
- 제안사유
 - 2025년 제1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25. 1. 9.)에서 동 안건 원안 동의
- 제안사유
 -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및 청소년·유소년 대표 선수 선발기준에 의거,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2025년도 국가대표·상비군·청소년·유소년 선수 선발 필요
 - 국가대표·상비군·청소년·유소년 선수 선발 정원

구분	마장마술	장애물	종합마술	계	비고
국가대표	4명	4명	4명	12명	대한체육회 승인
국가대표 상비군	4명	4명	4명	12명	본 협회 자체 선발
청소년 대표	4명	4명	-	8명	
유소년 대표	4명	4명	-	8명	
계	16명	16명	8명	40명	

※ 선발 구분 및 종목 중복 선발 불가(해당 선수의 선택 필요. 단, 아시안게임 제외)

- 주요내용
 - 2024년 개최된 국제대회 및 협회가 지정한 전국대회에서 각 종목별 통합순위에 따라 대표선수 선발

○ 2024년도 국가대표·상비군·청소년·유소년 선수 선발대회 현황

구 분		준계	대통령	프린세스	추계	회장배	계
마장 마술	S-4 Class	국대,상비군		1			1
	S-3 Class	국대,상비군	1			1	2
	S-2 Class	국대,상비군			1		1
	S-1 Class	국대,상비군	1	1	1	1	4
	A Class	청소년	1	1	1	1	4
	B Class	청소년	1	1	1	1	4
	포니 D Class	유소년	1	1	1	1	4

구 분		준계	대통령	프린세스	추계	회장배	계
장애 물	150 Class	국대,상비군	1	1		1	3
	145 Class	국대,상비군			1		1
	140 Class	국대,상비군	1	1	1	1	4
	130 Class	국대,상비군	1	1	1	1	4
	120 Class	청소년	1	1	1	1	4
	포니 90 Class	유소년	1	1	1	1	4
	포니 80 Class	유소년	1	1	1	1	4
종합 마술	국가대표 포인트	국대,상비군			1	1	2

- 국제대회 성적 제출 선수: 2명 (황영식, 정철희)
-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결원 발생 시 차순위 선수로 선발

□ 심의결과

구 분	마장마술	장애물	종합마술	계
국가대표	황영식, 김치수, 최삼중, 남동현	이기주, 김형호, 권재현, 김보선	강한수, 류시원, 방시래, 채준병	12명
국가대표 상비군	김 혁, 김오석, 이강진, 김태진	신승윤, 권만준, 조민규, 김춘필	황윤택, 육근창	10명
청소년 대표	김성현, 박지환, 김태훈, 이예진	이동화, 나현서, 지영민, 김지나	-	8명
유소년 대표	최준우, 변서진, 김용선, 신라원	곽나연, 강은오, 김태우, 편우성	-	8명
계	16명	16명	6명	38명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차 이사회-심의-제5호	2025. 1. 13.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5 국가대표 지도자 임용 계획안

□ 의결주문

- 국가대표 지도자 임용 계획안을 심의·주문함

□ 제안사유

- 2025년 제1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25. 1. 9.)에서 ‘국가대표 지도자 임용 계획안’ 원안 동의
- 2024년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기가 12월 31일로 종료되어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지도자 계약 관련에 따라 각 종목별(마장마술, 장애물, 종합마술) 1명의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필요

□ 주요내용

- 지도자 계약 기간: 대한체육회 승인 후 ~ 2027년 2월 28일
 - ※ 계약기간: 대한체육회 훈련기획부-8507(2024.09.04.) 및 훈련기획부-14046(2024.12.27.)에 따라 최초 채용(2년) 및 재임용 가능
- 선발 인원: 각 종목별 1명 (총 3명)

□ 주요 추진 일정(안)

- 임용 공고: 2025. 1. 14.(화)
- 지원 접수: 2025. 2. 11.(화) ~ 17.(월) 17시 限 (이메일, 방문 접수)
- 서류 심사: 2025. 2월 중 (심사위원: 3인 이내로 구성)
- 면접 심사: 2025. 2월 중 면접시간 후후 안내 (심사위원: 7인 이내로 구성)
-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사결과 승인 : 2025년 2월 중
- 이사회에서 선정 (2배수내에서 채용순위별 선정) : 2025년 2월 중

- 대한체육회 승인 : 2025년 3월 중
- ※ 상기 일정은 본 협회 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서류심사(안) [총점 40점]

- 일 시: 2025년 2월 중
- 장 소: 협회 사무실
- 심사위원: 3인 이내로 구성 ※ 심사위원 선정: 회장께 위임

□ 면접심사(안) [총점 60점]

- 일 시: 2025년 2월 중 *면접시간 추후 안내
- 장 소: 미 정
- 심사위원: 5~7인 이내로 구성 ※ 심사위원 선정: 회장께 위임
- 심사대상: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면접 대상인원(상위 2~5배수) 선발하여 면접심사 실시

- ※ 서류 및 면접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검토 필요
- ※ 지도자 연임 관련 검토 필요

□ 심의결과 : 국가대표 지도자 임용 계획안 원안 승인

□ 붙임(5-1) : 지원 공고문

붙임(5-1) 지원 공고문

승마 국가대표 지도자 지원 공고

2025. 1. 14.

KEF 사단법인 대한승마협회

공 고 문

승마 국가대표 지도자 지원 공고

“승마 국가대표 지도자 선임 계획”에 의거
대한승마협회 국가대표 지도자(마장마술, 장애물, 종합마술)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사]대한승마협회장

국가대표 지도자 지원 공고문

1. 모집 개요

직 위	종 목	모집인원	계약기간	보수조건
국가대표 지도자	마장마술	1명	대한체육회 승인 후 ~ 2027년 2. 28.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에 준함
	장애물	1명		
	종합마술	1명		

※ 1인 1종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

2. 응시자격

가.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승마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승마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승마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승마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안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승마종목의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승마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승마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승마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나.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 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2. 11.(화) ~ 17.(월) 17시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kefinside@gamil.com)
- 방문 접수 (휴무일 제외)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2025. 2. 18.(화) ~ 19.(수)

나. 2차: 면접 및 발표심사 - 2025. 2. 24.(월) 예정,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 개인별 훈련/운영 계획 10분 발표(발표 10분 이내로 준비)

다. 3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이사회에서 선정(2배수내에서 채용순위별 선정)

라. 4차: 대한체육회 승인

- ※ 단계별 합격자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
- ※ 심사 일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5. 제출서류

번호	목 록	부수	비 고
1	공모지원서	1	양식 별첨1
2	국가대표 지도자 훈련/운영 계획서	1	양식 별첨2
3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확인서	1	체육지도자연수원에서 본인 직접 신청 후 서류 발급
4	징계사실유무확인서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본인 직접 신청 후 서류 발급
5	확인서(범죄사실증명)	1	양식 별첨3
6	각종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	국가대표 경력 증명서 경기실적증명서

※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 링크: <https://dis.k-sec.or.kr/>

※ 미기재 되거나 미제출된 사항에 대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6. 기타사항

- 가.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응시를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대한승마협회 공개채용 응시자격 제한
-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응시원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제출 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고, 기타 사항은 대한승마협회(02-413-1679)로 문의요망

2025. 1. 14.

사단법인 대한승마협회(직인생략)

첨부: 승마 국가대표 지도자 공모 지원서 1부. 끝.

승마 국가대표 지도자 공모 지원서

인적사항	신청부문	마장마술 []	장애물 []	종합마술 []
	성 명			
	주민번호			만 세
	현 주 소			
	연 락 처			
	현 소 속		직 위	
	외 국 어	영어 [] 불어 [] 독일어 [] 기타 [:] 각 언어 구사능력 [상] [중] [하]로 표기		
학력사항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과 졸업		
	대학교	대학원(학위:)		
자격증	1.			
	2.	3.	4.	
주요 선수 경력	구분	활동기간	학교(선수/팀) 명	
	전문 선수			
	국가 대표			
주요 지도자 경력	구분	활동기간	지도팀 명	
	전문 지도자			
	국가 대표			
출전경력 올림픽, AG, 세계선수권, 기타국제대회	대회명	연도	순위	
지원 동기	1~2줄 내로 간략하게 기술			

본인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거짓없이 기술하였으며, 승마 - (종목명) 국가대표 지도자 공모에 지원합니다.

2025. . .

지 원 자 : (인)

승마 국가대표 지도자 훈련/운영 계획서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p>* 본 양식은 기본 양식으로써 지원자 희망에 따라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 가능, 본인이 지도자로 선임 시, 지도자로서 기본 국가대표 강화 훈련/운영 프로그램 및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대표팀 훈련/운영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p> <p>* 계획서 작성 시 참고 사항</p> <p><input type="checkbox"/> 훈련/운영 계획서 내용(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종목 특성에 맞는 국가대표 강화 훈련/운영 계획 예) 선수단 훈련/운영 계획, 선수단 융화, 각종 사고 방지 대책 등 • 제21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경기력 향상 계획 예) 각 국의 경기력, 훈련방법 등 정보수집, 현지 경기운영 및 선수단 운영 계획, 협회 지원 필요 사항 등 • 훈련/운영 계획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 및 훈련/운영을 통한 기대 효과 • 추가 국내 특별 훈련, 새로운 대회운영 및 장비 개발 등 • 기타 국내 승마 경기력향상 및 저변확대를 위한 계획 • 기타 자유주제로 주요 강조사항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작성할 것 <p>* 양식 및 분량 제한 없음</p>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증명사진, 주소, 소속팀,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전자우편, 학력사항, 경력사항,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본인확인, 선수등록,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 각종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장학생 선정, 각종 지급금 송금 등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① 본인 확인, 선수 등록, 대회출전 증명서발급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증명사진, 경력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③ 교통비, 수당 등 지급금의 입금에 이용 : 계좌번호 ④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시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인확인, 선수등록, 국내 및 국제대회 출전, 증명서 발급, 장학생 선정 등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신상정보(혈액형), 장애정보, 수급자 정보, 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인확인, 선수등록, 국내 및 국제대회 출전, 증명서 발급, 장학생 선정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동 의 자

이 름

(인)

2025 년 월 일

대한승마협회장 귀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소속	개인정보관리책임관	개인정보취급자	직위	이메일	연락처
(사)대한승마협회	사무처장 이재훈	김민형	차장	kef@sports.or.kr	02-422-7563

확 인 서 (범죄사실증명)

종 목	성 명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인은 대한승마협회 국가대표 지도자로서 범죄·수사 경력회보서의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훈련에 참가할 것이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시에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임 취소 등 이에 따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위 본인 : (서명)
대한승마협회장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차 이사회-심의-제6호	2025. 1. 13.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6 법인화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과실금 사용 승인

- 의결주문
 - 법인화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과실금 사용승인에 대하여 의결·주문함

- 제안사유
 - 회원종목단체 「법인화 기금 및 경기력지원기금 관리지침」에 의거, 협회 재정자립적립금의 기금만기 해지 및 재적립 시 대한체육회의 승인 필요
 - 만기 시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은 이사회 승인 후 인건비(운영비 포함) 및 사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여 협회 직원 퇴직적립금 등으로 사용 계획

- 주요내용
 - 법인화 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 현황(1년 만기 정기예금) (단위: 원)

재 원	금융기관	만기일/ 재적립일	연이율 (%)	예치금액① (원금)	이자예상액 ② (세 후)	계 [①+②]	대한체육회 질권설정액
법인화 기금	하나은행	2025. 4. 19./ 2025. 4. 21.	3.65	1,232,222,642	38,049,802	1,270,272,444	1,232,222,642
소 계				1,232,222,642	38,049,802	1,270,272,444	1,232,222,642

재원	금융기관	만기일/ 재적립일	연이율 (%)	예치금액① (원금)	이자예상액 ② (세 후)	계 [①+②]	대한체육회 질권설정액
경기력 지원비 적립금	수협은행	2024. 4. 19./ 2025. 4. 21.	3.65	1,846,525,486	57,018,860	1,903,544,346	1,846,525,486
소 계				1,846,525,486	57,018,860	1,903,544,346	1,846,525,486
법인화 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계				3,078,748,128	95,068,662	3,173,816,790	3,078,748,128

※ 법인화 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금융기관 선정 및 재적립일은 일정 등을 고려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이자수익금은 95,068,662원으로 협회 사무처직원 퇴직금 적립 등으로 사용 계획
- 만기일(2024. 4. 19.) 이후 협회 운영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제1금융권)에 예치 계획
- 2024년도 법인화 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과실금 사용내역

사업명	예산과목	금 액	세 부 내 역									
사무처 직원 퇴직적립금	보수	95,067,160	○ 퇴직적립금 일부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금액(원)</th> <th>재원</th> </tr> </thead> <tbody> <tr> <td>직원</td> <td>56,391,870</td> <td>◦ 법인화 기금 과실금</td> </tr> <tr> <td>직원</td> <td>38,675,290</td> <td>◦ 경기력지원비 과실금</td> </tr> </tbody> </table>	대상	금액(원)	재원	직원	56,391,870	◦ 법인화 기금 과실금	직원	38,675,290	◦ 경기력지원비 과실금
			대상	금액(원)	재원							
직원	56,391,870	◦ 법인화 기금 과실금										
직원	38,675,290	◦ 경기력지원비 과실금										
총 계	95,067,160											

심의결과: 법인화 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과실금을 협회 직원 퇴직금 적립 등으로 사용 원안 승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차 이사회-심의-제7호	2025. 1. 13.

7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계획

의결주문

-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계획에 대해 심의·주문함

제안사유

- 협회 정관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제8조(총회의 소집)에 의거

주요내용

- 일 시 : 2025. 1. 24.(금) 12:00
- 장 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
- 보고사항
 - 전차 회의록 초록
 - 제41대 회장선거 결과
 -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심의사항
 -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 정관 개정안
 - 임원 및 스포츠평정위원회 선임안
 - 등록선수 임원 활동안
 - 감사 선임안

심의결과: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계획 승인